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한국환경공단

# - 순 서 -

1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개요

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3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감면

4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납부 절차



# 1.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요

## 1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
  - ✓ 폐기물, 소각, 매립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용어
  - ✓ 부담금 :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생활폐기물 처리의무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 처리의무자)

## 2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법률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7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부터 제24조 (이의신청)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률 제정: 2016.5.29.)
  - 2018.1.1.이후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국가(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전액 납입됨
- 국가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특정 재정사업에 집행

####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시설 개선 등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 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 1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 ✓ 발생원(업종), 배출자(기업규모), 배출·처리량 등과는 관련 없음

#### 부과대상 폐기물 유형(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6)

#####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 ✓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 ✓ 건설폐기물은 제외(아래 별도 분류)

#####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대상이 아님

#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외 대상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2항제1호

###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다음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

###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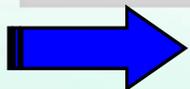
6.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

7.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

8.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17-228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아님**

#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분류



\* 그림 출처: 환경부(2018), 2017년도 전국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b>생활폐기물</b>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b>사업장폐기물</b>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b>사업장일반폐기물</b>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b>사업장생활계 폐기물</b>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1)
<b>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b>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1)
<b>건설폐기물</b>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
<b>지정폐기물</b>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 사업장폐기물

## 다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소각

**소각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에서 처분하는 것

- ① 일반소각시설
- ② 고온소각시설
- ③ 열 분해시설(가스화 시설을 포함한다)
- ④ 고온 용융시설
- ⑤ 열처리 조합시설(①에서 ④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 시설의 조합 시설)

## 매립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처분하는 것

- ① 차단형 매립시설
- ② 관리형 매립시설

- 스스로 소각·매립하거나 소각·매립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모두 대상
-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소각·매립이 아닌 경우(재활용, 파쇄·분쇄 등)는 대상 아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올바로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인계서 등으로 확인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및 처리방법 확인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1. 중간처분 시설	가. 소각시설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압축시설, 파쇄·분쇄 시설, 절단시설, 용융시설, 증발·농축 시설, 정제시설, 유수 분리시설, 탈수·건조 시설,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고형화·고화·안정화 시설, 반응시설, 응집·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소멸화 시설,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마. 기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처분 시설	가. 매립시설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 파쇄·분쇄·탈피시설, 절단시설, 용융·용해시설, 연료화시설,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 유수분리시설, 탈수·건조시설, 세척시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고형화·고화시설, 반응시설, 응집·침전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이상인 시설(소멸화·사료화·퇴비화시설·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부숙토 생산시설),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소성로	
	마. 용해로	
	바. 소성·탄화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	
	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서지] 시행령 2014.4.10 (약화)

신고번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장등록번호

신고인: ③ 상 명(대표자)

주 소(사업장 또는 배출원명)  (전화번호: )

④ 업 종  ⑤ 주 영로 및 사유명(톤/년)  ⑥ 주 생산동량 및 생산량(톤/년)

주 제조공장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구분	종류	분류번호	⑦ 배출량		⑧ 운 반 량		⑨ 처 리 량	
			상 태	단 위	상 태	단 위	상 태	단 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x210mm(배우자 40g/1기(물류용))

⑪ 운 반		⑫ 처 리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배출자가 납부의무자임
- ✓ 처리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이며, 이 경우 처리자는 새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자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 ✓ 시장·군수·구청장 등도 자신의 사업장(예. 청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됨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자**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2. 20.>

(앞쪽)

신고번호 제 호			
<b>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b>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공사내역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발주자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 납부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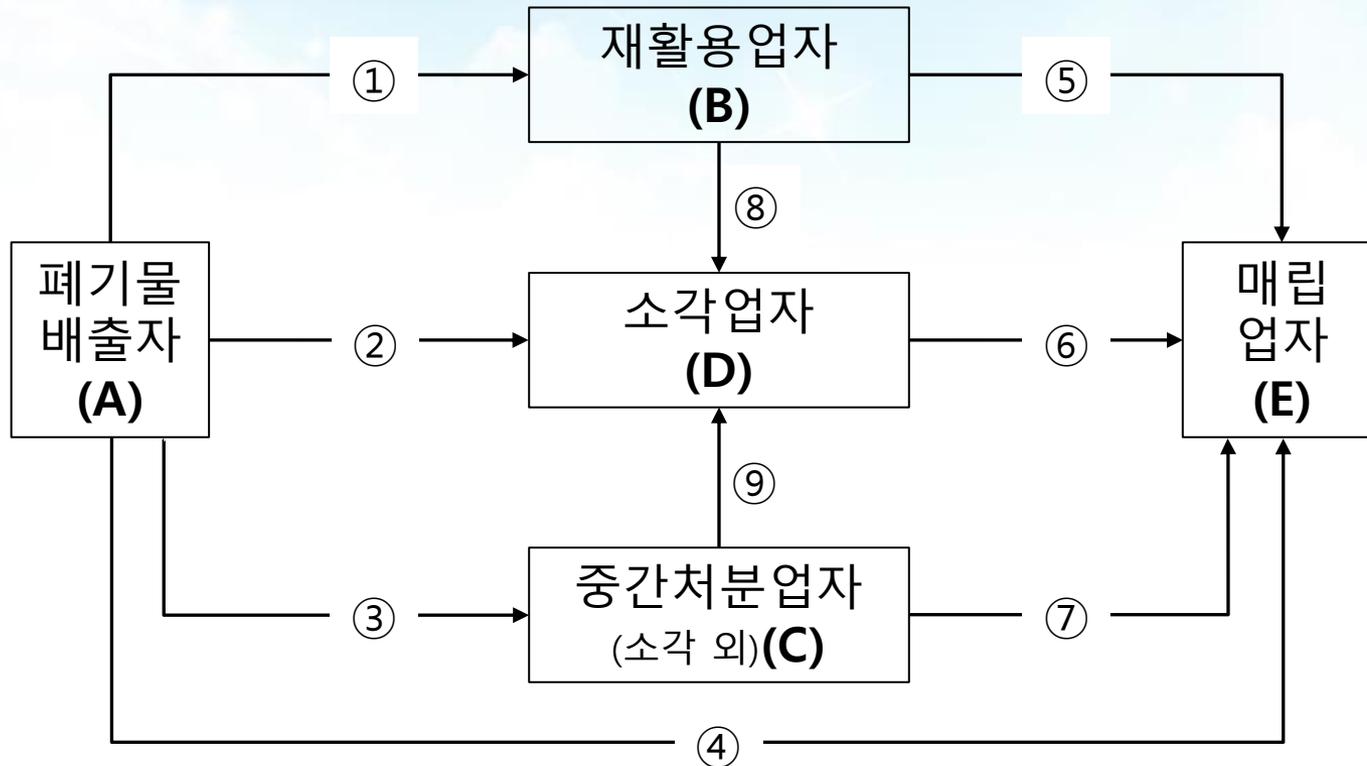
## 건설폐기물

###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 적정처리비(예정가격) 산정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9호)>

- 1)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거나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 특히, 적절한 처리비용에는 '18.1.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처리업자가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하거나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한다.
- 2)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5호 「공사입찰유의서」(‘16.12.30)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할 수 있다.
- 3) 위 1)의 경우를 제외한 입찰에서도 이 기준을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 [참고] 폐기물 처리 체계에 따른 납부의무자



- ①, ③ : 배출된 폐기물이 소각 또는 매립되지 않으므로 처분부담금 부과대상 아님
- ②, ④ : 배출된 폐기물이 소각 또는 매립되었으므로 A가 납부의무자
- ⑤~⑨ : 새로운 폐기물배출자인 B, C, D가 납부의무자

#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 및 감면

## 1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처분(소각매립)한 폐기물의 양에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text{폐기물처분부담금(원)} = \text{폐기물처분량(kg)} \times \text{산출기준(원/kg)} \times \text{산정지수}$$

- 처분한 폐기물량** : 위탁 또는 자가처리한 폐기물 유형별 소각 또는 매립한 중량(kg)  
 ※ 정기 신고 : 전년도 처분량(1월 ~ 12월), 수시 신고 : 당해년도 처분량
- 산출기준** : 폐기물 유형별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원/kg	10원/kg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10원/kg)
	가연성	10원/kg
건설폐기물	30원/kg	10원/kg

※ 지자체장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으로 소각·매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요율 적용**

-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18)는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 적용 (연초에 환경부장관이 고시)  
 ※ 처분년도 기준으로 2019년 1.019, 2020년 1.023, 2021년 1.024 적용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출기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6)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	소각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10원/kg	(10원/kg)
	가연성	25원/kg	10원/kg

불연성폐기물			가연성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성오니류</li> <li>•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열경화수지에 한함)</li> <li>• 광재류</li> <li>• 분진류</li> <li>• 폐주물사 및 폐사</li> <li>• 폐내화물</li> <li>• 폐도자기조각</li> <li>• 소각재</li> <li>•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촉매(금속성 폐촉매에 한함)</li> <li>• 폐흡착제 및 폐흡수재 (광물류로 제조된 경우에 한함)</li> <li>• 폐석고 및 폐석회</li> <li>• 연소잔재물</li> <li>• 폐석재류</li> <li>• 폐패각</li> <li>• 폐토사류</li> <li>• 폐콘크리트류</li> <li>• 폐아스팔트콘크리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벽돌</li> <li>• 폐블록</li> <li>• 폐기와</li> <li>• 폐금속류</li> <li>• 폐유리류</li> <li>• 폐타일</li> <li>• 폐전주</li> <li>• 폐소화기류</li> <li>• 폐전지류</li> <li>• 폐흑연가루</li> </ul>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 ▶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 요율 적용
-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열경화성수지, 금속성 폐촉매, 광물류로 제조된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폐기물로 배출되기 이전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정보(MSDS) 등으로 해당 품목에 해당함을 증명
- ▶ 가연성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함. 다만 배출단계에서부터 두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 폐기물로 본다.
  - 가연성 물질 함유량 5% 미만 증명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폐기물 시험분석결과서

## 2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1 자가 매립 후 재활용 (감면률 : 50%, 100%)	2 소각열에너지 회수·이용 (감면률 : 50%, 60%, 75%)	3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감면률 : 100%)	4 중소기업 (감면률 : 50%, 100%)	5 지정폐기물 처분 (감면률 : 100%)
6 도서 폐기물 처분 (감면률 : 100%)	7 재난폐기물 처분 (감면률 : 100%)	8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감면률 : 100%)	9 불법폐기물 처분 (감면률 : 100%)	

- 감면 받으려는 납부의무자의 **감면신청에 의해서** 처리
- 감면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을** 적용

1

자가 매립 후 재활용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매립

[ 감면대상 ]

- 자가매립시설\*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 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

[ 감면구분 ]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  
까지 재활용한 경우

[ 감면비율 ]

100%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50%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

※ 자가매립후 재활용 감면은 선감면 후정산 적용

예) '18년 매립량 중 ①'18년에 다시 굴착하여 재활용한 양은 100%, ②잔량은 2~3년차에 모두 재활용 될 것으로 가정하고 선감면(50%) 적용하여 처분부담금 부과

☞ '21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시 지난 2년간('19~'20년) 미재활용량에 대하여 처분부담금 추가 부과

※ 납부의무자의 재활용량 중 연도별 매립량 비율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

- 전체 재활용량 중 당해년도 매립량 중 재활용량, 이전 매립량 중 재활용량, 매립과 무관한 재활용량 등을 구분해야 정확한 감면금액 산출가능

## 2 소각열에너지 회수·이용

-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소각

### [ 감면대상 ]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여 이용

### [ 감면구분 ]

소각열에너지를 50%이상 60%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50%

소각열에너지를 60%이상 75%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60%

소각열에너지를 75%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 [ 감면비율 ]

###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별지 서식 7>

제 호

###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3. 주소:
4. 인증사항

대상폐기물종류	
소각시설 설치위치	
에너지 회수 사용 유형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년월일	
인증유효년월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의해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받은 시설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만 감면 적용

### 3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소각, 매립

#### [ 감면대상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

#### [ 감면비율 ]

100%

산출근거

수입 : '16년도

플라스틱(일반) :  
 총 투입량 = 21,972.26(Kg)  
 감면중량 = 6,089.74(Kg)  
 산정요율 = 150  
 산정지수 = 1.1477  
 최종 부과금액 = 2,734,250원

인터넷자료(www.gro.or.kr)와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전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납부번호 0134141618104313001			
회계년도	회계	소관	징수관계화
2018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117977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년월일)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2018년 01월 30일	부담금 2,734,250 원
			납기내 금액 2,734,250 원
납기후 납부기한		2018년 02월 06일	부담금 2,734,250 원
			경과산금 64,680 원
			납기후 금액 2,788,930 원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세아금융그룹,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2018년 01월 10일  
 한국환경공단 www.budamg.go.kr

국공인

수납인

- ❖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
- ❖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처분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 4 중소기업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소각, 매립

## [ 감면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

## [ 감면구분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 감면비율 ]

100%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50%

❖ 중소기업감면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재무제표(법인 전체 매출액) 등으로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간 협업 및 정책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일반현황, 우수중소기업DB, 중소기업확인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센터]-[이용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에는 사업자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 중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기업명 : \_\_\_\_\_ 법인등록번호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대표자명 : \_\_\_\_\_  
 주소(본점) : \_\_\_\_\_ 주업종 : \_\_\_\_\_  
 주업종 : \_\_\_\_\_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주소 : \_\_\_\_\_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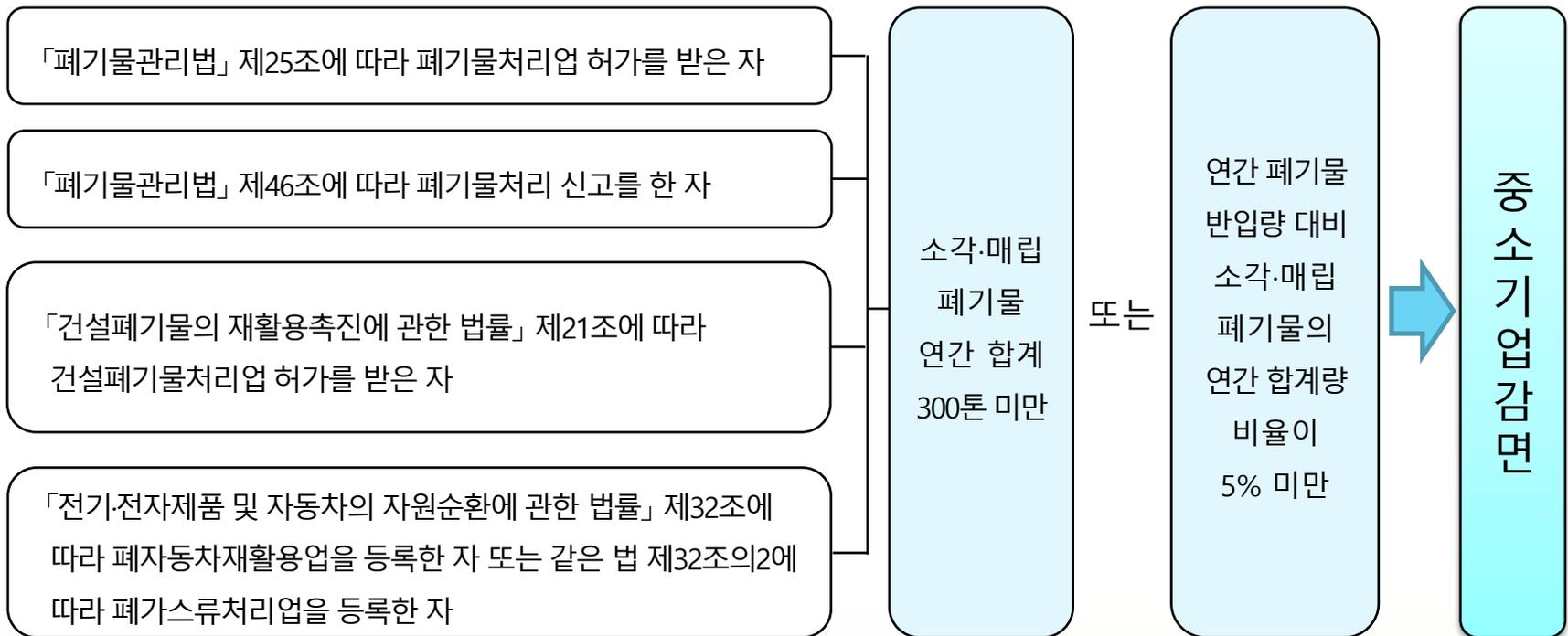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기업명 관하여 표시)  
 \* 발급사실 및 발급위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info.smba.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차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주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민8개 사업연도내의 평균매출액종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며, 현재 영리하는 업종과 다를 수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중소기업감면

-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소각·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량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로 한정



# 연간 반입량 대비 소각·매립량 증빙자료

- ❖ 연간 반입량 대비 소각·매립량이 5% 미만 해당 여부는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등으로 확인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관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 「폐관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3호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폐관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4호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 재활용결과보고서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폐기물공동처리 또는 공동방지사설 중소기업감면

- ❖ 공동운영기구 구성원 중 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각·매립량에 대해 중소기업 감면 적용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납부

- **공동운영기구(또는 공동방지사설) 대표자**
  - (사업장폐기물 공동 처리)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에게 '배출자신고', '실적보고', '개별사업자별 처리상황 기록' 등 의무 부과
  - (폐수 등 공동방지사설) 공동운영기구 대표자는 '배출자신고'를 해야하며, 각 개별업체별 용수사용량 및 폐수배출량 등을 기록해야 함

## 감면 증빙서류

- 구성원 감면신청 총괄표(자순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기준으로 엑셀로 작성)
- 구성원별 중소기업 감면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매출액 증빙자료)
- 구성원별 소각·매립량 구분 현황 및 증빙서류(대상 업소별 연간 폐수배출량 및 이를 근거로한 소각·매립량 등)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공동처리 운영기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공동방지사설 설치 증빙서류(운영규약 등)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소각, 매립

## [ 감면대상 ]

## [ 감면비율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100%

## ❖ “지정폐기물”이란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⑨ 폐기물 종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차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 6 도서(島嶼) 폐기물 처분

-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소각, 매립

### [ 감면대상 ]

### [ 감면비율 ]

-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를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

100%

❖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

① “도서”란 만조(滿潮)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 7 재난폐기물 처분

-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소각, 매립

### [ 감면대상 ]

### [ 감면구분 ]

### [ 감면비율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 소각 또는 매립

지방자치단체 장이 **재난·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납부의무자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100%

## 8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지방자치단체)
- ✓ 소각, 매립

### [ 감면대상 ]

- 지방자치단체장이
- 사용기간 연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사용 종료(예정) 매립시설을 정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 소각 또는 매립

### [ 감면비율 ]

100%

## 9 불법폐기물 처분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지방자치단체)
- ✓ 소각, 매립

### [ 감면대상 ]

- 지방자치단체장이
-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된 폐기물**을
- 소각 또는 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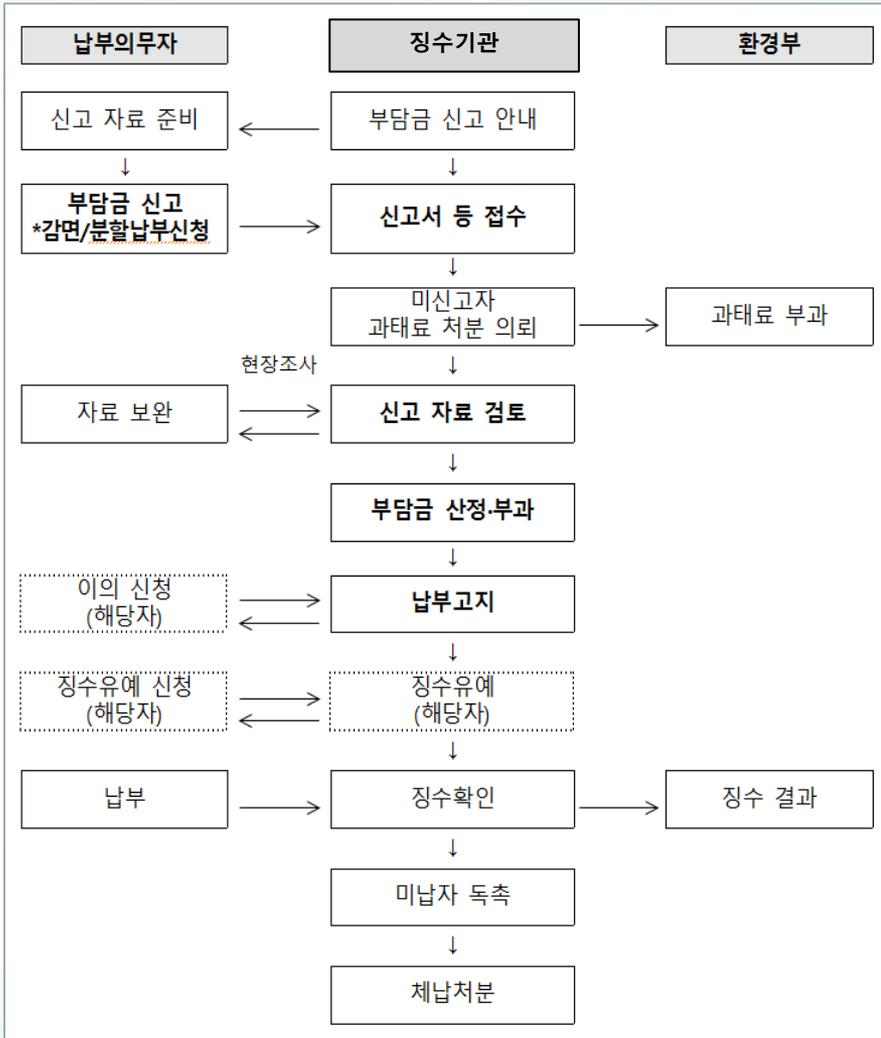
### [ 감면비율 ]

100%

❖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에 따른 불법 투기 및 방치 폐기물 대집행계획의 사본

# 4.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납부 절차

## 1 징수기관 및 신고종류



### 징수기관

- 생활폐기물 :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사업장폐기물 : 한국환경공단
- ❖ (예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도지사가 징수(시행령 제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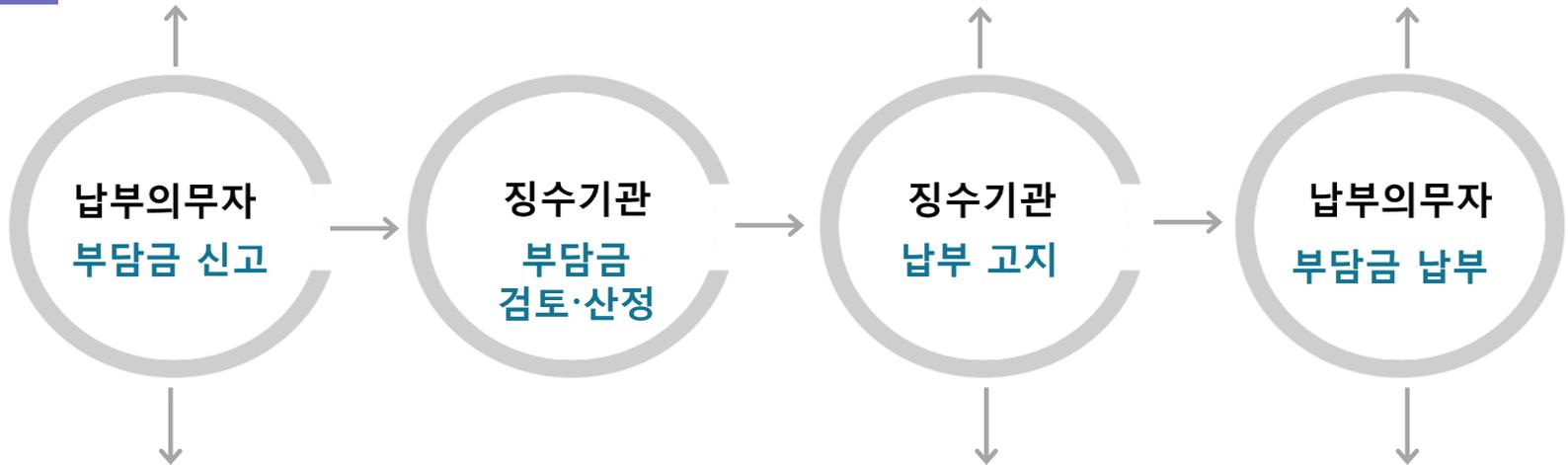
### 신고종류

- 수시신고 : 건설공사(준공), 휴·폐업 등으로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경우 신고 (시행령 제20조)
- 정기신고 : 수시신고 외 나머지 경우(시행령 제19조)

## 신고·납부시기

### 정기 신고

~매년 3월 31일



### 수시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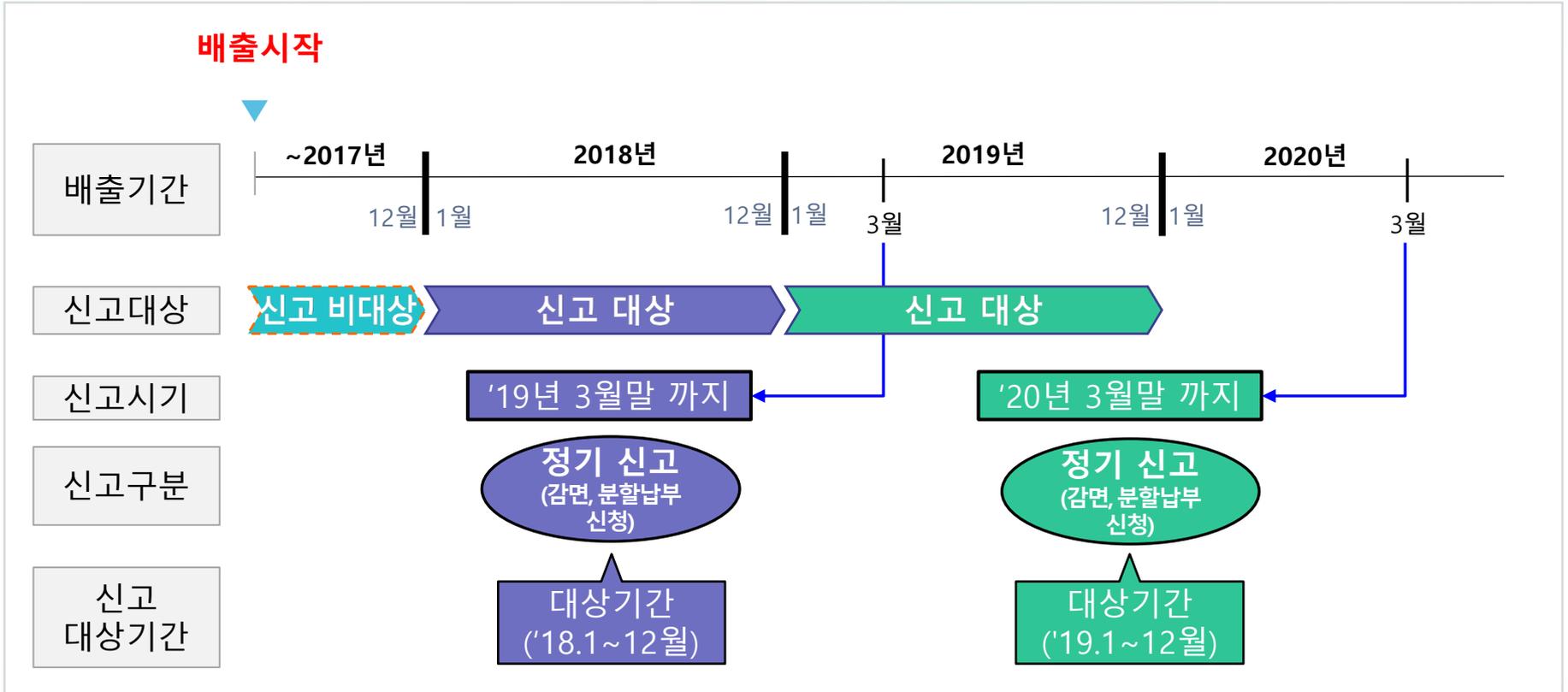
배출종료 후  
30일 이내

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 수시신고 시 감면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신청(단, 지정/도서지역/매립시설정비 폐기물 감면은 수시신고 시 신청)

# [ 신고 예시 1 ]



※ 전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에 대하여 정기 신고 시 감면 및 분할납부 신청 함께 진행



## 2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인, 담당자정보, 납부의무자 구분, 감면대상 등 기재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기재(예: 종합건설업(41))
  - 주소 : 사업장(배출현장) 주소 기재
- 폐기물종류별로 매립과 소각 기재란에 구분하여 기재
  - 폐기물 종류/분류번호/유형, 처분량, 납부금액 등 기재

※ 폐기물유형: 1-생활, 2-사업장불연성, 3-사업장가연성, 4-건설 폐기물

### 첨부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공통)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공통)폐기물 유형,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 증명자료  
예) [올바로 실적보고서](#), 폐기물관리대장, [올바로 인계서](#) 등
3.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지정폐기물)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4. (위탁처분)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자가처분)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주)○○○산업	업종 ○○ 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56789					
	성명(대표자) 홍길동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111111-00000							
	주소(사업장) ○○광역시 중구 한경로 700			(전화번호 : 032-000-0001)					
담당자	성명(작성자) ○○○	직위 과장		전화번호 032-000-0005					
	납부의무자 구분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V]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감면대상 여부		[ ] 자가매립 후 재활용, [V] 소각열에너지회수, [ ]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V] 중소기업, [ ] 지정폐기물처분, [ ] 도서지역폐기물처분, [ ] 재난폐기물처분							
연간 매출액		10,000,000,000 원			총 폐기물 처분량		250,000 kg		
신고내용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폐기물 처분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자가	위탁				
폐기물 매립	폐석고	51-12-01	2	[ ]	[V]	80,000	10	1	800,000
				[ ]	[ ]				
				[ ]	[ ]				
총 신고금액(원)									800,000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폐기물 처분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자가	위탁				
폐기물 소각	폐안성수지류	51-03-01	3	[ ]	[V]	70,000	10	1	700,000
	제재부산물	51-20-02	3	[ ]	[V]	100,000	10	1	1,000,000
				[ ]	[ ]				
총 신고금액(원)									1,700,000
자가 매립 후 3년 이후 미재활용량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매립량(kg) (매립연도)	연도별 재활용량(kg)		3년 이후 미재활용량(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부과율	납부금액 (원)
			당해	1년차					
	해당없음							50%	
폐기물처분부담금 총 신고금액(원)									2,500,000

# [참고] 신고 시 첨부서류 예시

소각·매립처분한 폐기물 종류	위탁/자가 구분	첨부서류 목록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생활계+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위탁하여 처분한 경우	① 올바른 실적보고서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③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위·수탁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스스로 처분한 경우	① 올바른 실적보고서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③ 폐기물처분시설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
지정폐기물	위탁하여 처분한 경우	① 올바른 실적보고서 ②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③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위·수탁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스스로 처분한 경우	① 올바른 실적보고서 ②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③ 폐기물처분시설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
건설폐기물	위탁하여 처분한 경우	① 올바른 실적보고서 ②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③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위·수탁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스스로 처분한 경우	① 올바른 실적보고서 ②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③ 폐기물처분시설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

# [참고] 올바로 실적보고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4.4.17>

(앞 쪽)

## ( 2018 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배출자용)

문서번호: \_\_\_\_\_ 시 행 일: 2019년 1월 0일  
 수 신: 000도 00시청  
 발 신: (업소명) 0000 폐기물처리용역 (대 표 자) 000 **전주시영탁인빌**

①업소명	0000 폐기물처리용역	③소재지	분류번호 000도 00시 00면 00로 999		
②대표자	000	④전화	000-0000	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⑥배출시설	1. 대기 중, 2. 수질 중	⑦업종	(0000업) 00000-10		
⑧공단		④주생산물	해당없음	⑩종업원수	00 명
⑩제품제조과정	해당없음				
⑫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명명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2018-0000 호 2. 신고 2018/0/0 3. 관리번호: 4. 확인				

⑨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보유현황

1. 시설명		2. 사용개시일		3. 처리능력(톤/일)			4. 처리량(톤/년)		
구분	종류	계	지정	계	지정	일반	계	지정	일반
				설치승인면적		매립가능용량		기 매립량(해당 연도)	
				m <sup>2</sup>		m <sup>3</sup>		m <sup>3</sup>	

### ⑩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종류 (분류번호)	2. 총 발생량 (톤/년)	3. 성질· 상태	4. 자가처리		5. 위탁처리(톤/년)			6. 보관량(톤/년)		7. 처리비용 (천원)	
			방법	처리량 (톤/년)	방법	구분	처리자	처리량 (톤/년)	이월보관량		누적보관량
폐합성수지류 510301	0000	고상	-	50,000	-	-	-	50,000	0,000	0,000	0
#	-	#	-	-	(2101)업 외수탁(위탁)	2	0000	50,000	-	-	0
폐수처리오니 510201	0000	고상	-	100,000	-	-	-	100,000	0,000	0,000	0
#	-	#	-	-	(2200)박 기(위탁)	1	0000	100,000	-	-	0

우000 / 주소 000도 00시 00면 00로 999 / 전화번호 000-0000  
 담당부서 000 담당자 000 / 전송 000-0000

210m x 297m m [백승지 80g/m<sup>2</sup>]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12.13>

(앞 쪽)

## ( 2018 년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① 상호(명칭)	000000	② 대표자	000	③ 생년월일	000000
④ 업 종	00업	⑤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0		
⑥ 공사명	00000000	⑦ 공사기간	2017.0.0~2018.0.0		
⑧ 배출현장	00도 00시 00로		(전화번호: 000-000-0000)		
⑨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2017-00호		2. 신고일: 2017.0.0		

### ⑩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보유현황

구분	종류	2. 사용개시일	3. 처리능력(톤/일)		4. 처리량(톤/년)	
			계	일반	계	일반
중간처리 시설	( )	...				
매립시설	( )	...	설치승인면적	매립가능용량	기 매립량(당해년도)	
			m <sup>2</sup>	m <sup>3</sup>	m <sup>3</sup>	

### ⑪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종류 (분류번호)	2. 총 발생량 (톤/년)	3. 성상	4. 자가처리		5. 위탁처리(톤/년)			6. 보관량(톤/년)		7. 처리 비용 (천원)	
			방법	처리량 (톤/년)	방법	구분	처리자	처리량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폐목재(건설) (40-02-06)	15,000	고상		0,000	(2011)운전자 무폐기물 제조 (개)(위탁)	개발용 신 고가	0000	15,000	0,000	0,000	0
폐합성수지(건설) (40-02-07)	20,000	고상		0,000	(2101)일반 소각(위탁)	중간처리 업자	0000	20,000	0,000	0,000	0
폐보드류 (40-04-11)	30,000	고상		0,000	(2201)민간 위탁(위탁)	최종처리 업자	0000	30,000	0,000	0,000	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0. 0

00시장 귀하

대표자 **전주시영탁인빌**

# [참고] 배출자 신고증명서/처리계획 확인 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4.17>

(양쪽)

신고번호 제 호	
<b>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b>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또는 배출현장) (전화번호: )
⑤ 업종	⑥ 주 원료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③ 폐기물			성질 상태	⑩ 배출량		⑪ 운 반		⑫ 처 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⑬ 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6. 17.>

(양쪽)

관리번호 제 호	
<b>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b>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업종	⑥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⑨ 폐기물 종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의료폐기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제6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 [참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2. 20.> (일쪽)

신고번호 제 호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공사 내역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발주자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 주기	처리 구분	운반차	운반량 (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
	□□-□□-□□									
	□□-□□-□□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참고] 위·수탁 계약서 양식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안)

1. 계약명 :
2. 배출장소 :
3. 운반장소 : 출발지 - , 도착지 -
4. 처리장소 :
5. 결제조건 :
6. 위·수탁 계약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1. 용역명 :
2. 배출장소 :
3. 운반장소 : 출발지 - , 도착지 -
4. 처리장소 :
5. 결제조건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AT 별도)

처리  
방법

일하고 본  
리자" 가

월 일

수집·운반업자(이하 "운반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배출자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인)
수집·운반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인)
처분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인)

배출자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인)
배출자의 연대보증인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인)
수집·운반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인)
	상 호	소 재 지		
처리자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인)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인)
	상 호	소 재 지		

<출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출처: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7

# [참고] 용역계약서로 위탁처리계약서 대체하는 경우

##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 ① 용역계약서(나라장터)
- ② 폐기물 종류별 수량, 배출현장주소, 처리단가 등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 3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 감면신청서

- 신청인(사업장 등) 및 담당자 정보
- 납부의무자 구분 및 감면대상 여부
- 연간 매출액 및 총 폐기물 처분량
- 신청내용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처분방법, 처분량, 처분부담금 등)
- 감면사유, 감면금액

#### 첨부서류

- (에너지회수 감면) 소각 처분한 폐기물 양에 대한 증명 자료,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 (폐기물부담금 감면)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 납부대상 제품 등 처분량 증명자료
- (중소기업의 감면)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지정폐기물 감면) 지정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www.budan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주)○○○산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56789						
	성명(대표자) 홍길동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111111-000000						
	주소(사업장) ○○광역시 중구 환경로 700	(전화번호 : 032-000-0001)						
납부의무자 구분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V]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청내용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처분방법		폐기물처분량 (kg)	폐기물 처분부담금 (원)	감면사유 (1-6)	감면율 (%)	감면금액 (원)
		매립	소각					
폐석고	51-12-01	[V]	[ ]	80,000	800,000	3	50	400,000
폐합성수지류	51-03-01	[ ]	[V]	70,000	700,000	3	50	350,000
제재부산물	51-20-02	[ ]	[V]	40,000	400,000	1	50	200,000
				60,000	600,000	1	75	450,000
총 감면금액								1,400,000
연 매출액	10,000,000,000 원	폐기물 총 처분량	250,000 kg					
첨부서류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로 없음							

# [참고] 감면신청 시 첨부서류 예시

구분	첨부 서류	예시
소각열에너지회수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폐기물부담금 납부	가.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 연간 폐기물 반입량 및 소각·매립량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자료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도서지역 폐기물	폐기물을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승인신고서(스스로 처분한 경우) -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재난폐기물	가. 재난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계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처분	매립시설 정비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 소각·매립량 증명자료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불법폐기물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에 따른 불법 투기 및 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불법 투기 및 방치 폐기물 대집행계획의 사본

## 4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신청대상

- 정기 신고 납부의무자
-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방법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

### 납부방법

- 4회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

1회분	5월 20일 까지
2회분	7월 20일 까지
3회분	9월 20일 까지
4회분	11월 20일 까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3. 25.>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주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분할납부 신청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금액(원)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횟수	납부기한	납부금액	비고
	제1회	5월 20일까지		
	제2회	7월 20일까지		
	제3회	9월 20일까지		
	제4회	11월 20일까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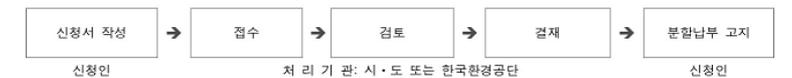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귀하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5 폐기물처분부담금 전자신고

[www.budamgum.or.kr](http://www.budamgum.or.kr)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감면 신청, 분할납부 신청 등 가능



※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 제출 가능

\* 인터넷 주소창에 <https://wds.budamgum.or.kr/wdsMain/index.do> 입력 시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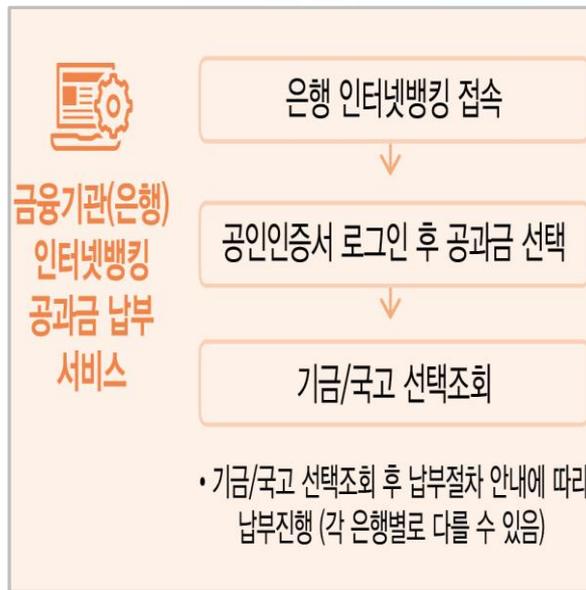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방법

###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국고금 수납은행)



### 고지서 납부 (국고금 수납은행)

산출근거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걸 영수증 (납부자용)

납부번호		납부내역		
회계연도	회계	소관	징수관	계좌
	환경개선특별회계			
입계명 (상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주입일)			
납부자 주소				
납부기간	년 월 일	납기내 금액	원	원
문의처: <input type="text"/> 년 월 일				

인도당지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뱅킹으로 전자 납부가능 수 있습니다.

납부안내

폐기물처분부담금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납부내역		
회계연도	회계	소관	징수관	계좌
	환경개선특별회계			
입계명 (상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주입일)			
납부자 주소				
납부기간	년 월 일	납기내 금액	원	원
문의처: <input type="text"/> 년 월 일				

-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지정 (수수료 납부자 부담: 납부금액의 1%)
- **신용카드 납부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지불수단을 신용카드로 선택할 경우에만 가능
- 사업자인 경우, **기업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대표자 개인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불가)
- 은행에 따라 **공과금-기금/국고가 아니라 공과금-국세-기금/기타 국고**로 메뉴가 구성된 경우 있음

## 8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

### 신청대상

- 정기/수시 신고에 따라 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
-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받은 감면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시기

- 납부통지를 받거나 감면금액을 반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은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www.budampum.or.kr)에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납부고지서 발부번호			
고지서 발부일자		년	월 일
부과금액			
이의신청 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b>한국환경공단 이사장</b> 귀하	
접수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수수료 원/음



## 10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 등

### 부담금 환급

- 과오납된 금액이 있거나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과오납액 또는 감면금액에 환급가산금**(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지급

### 가산금 부과

-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체납처분

- 독촉을 받은 자는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미납 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감사합니다

